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한기영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41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2월 1일

발 의 자 : 한기영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동길, 권영희, 김경우,
김상진, 김호평, 김화숙,
문병훈, 박기재, 오중석,
이경선, 이동현, 이현찬,
최영주, 홍성룡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- 현 조례상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기획조정실장으로 규정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 기획조정실장으로 규정하고 있음. 이에 시 기획조정실장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주관기관인 시가 아닌 보조대상기관인 교육청에서 심의를 주관하는 문제를 초래하는 바 시 평생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시 평생교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위원장으로 변경(안 제12조제1항).
- 나. 시 재정기획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(안 제12조제1항).
- 다. 교육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과장(시 교육정책과장, 교육청 예산담당관)으로 조정(안 제15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.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시 평생교육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위촉직 위원 :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교육계·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.
2. 당연직 위원 : 시 재정기획관 및 교육청 교육정책국장·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의 교육 관련 담당과장(담당관)과 교육청의 예산 관련 담당과장(담당관)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<u>시의 기획조정실장</u>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<u>서울특별시 교육청의</u>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위촉직 위원 :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교육계·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2. 당연직위원 : <u>시의 청소년 관련 담당국장, 교육관련 담당국장 및 교육청의</u> 교육정책국장·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.</p> <p>제15조(교육실무협의회)</p> <p>② 위원장은 <u>시의 교육 관련 담당국장과 교육청의</u>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.</p>	<p>제12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<u>시 평생교육국장</u>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<u>서울특별시 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의</u>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위촉직 위원 :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교육계·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2. 당연직위원 : <u>시 재정기획관 및 교육청</u> 교육정책국장·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.</p> <p>제15조(교육실무협의회)</p> <p>② 위원장은 <u>시의 교육 관련 담당과장(담당관)과 교육청의 예산 관련 담당과장(담당관)</u>으로 한다.</p>